

채용 가산점수 기준

구 분	가산비율	제출증빙서류	비고
취업지원대상자	각 전형별 만점의 10% 또는 5%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•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1. •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1~3 항목 참조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각 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3%	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	
장애인	각 전형별 만점의 5%	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	

1. 취업지원대상자
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다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마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- 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2. 의사상자

- 가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- 나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

3. 장애인

- 가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자